

정관 신 · 구 대비표

중전 규정			개정 규정		
조문	내용	비고	조문	내용	비고
제4조 제2항	1.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정원수의 집하·선별·출하·판매(수출) 2. 정원수 등 판매량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수립 3. 정원수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 4. 순천만가든마켓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구축 5. 국내외 정원용 식물, 국내외 정원 자재 및 용품 등 제품개발 및 판매 6. 정원수 및 정원자재 소비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7. 순천만가든마켓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사업 8.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학술연구용역 9. 제1호부터 제8호와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업 10. 상기 각호의 부대사업 11. 그 밖에 지역 정원수 이용촉진 및 정원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변경 삭제 삭제 변경 변경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유지	제4조 제2항	1. 정원식물의 집하·선별·출하·가공·판매 및 수출 2. 정원식물 재배에 필요한 종자 및 종묘생산사업 3. 정원식물 및 정원기자재 전자상거래 4. 순천만가든마켓 등 정원관련 시설 관리·위탁운영사업 5. 정원에 필요한 자재·용품의 생산 및 판매사업 6. 그 밖에 지역 정원수 이용촉진 및 정원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7. 기타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변경 추가 추가 변경 변경 11항을 유지 추가
제19조	5. 사업 실적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변경	제19조	5.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변경
제22조	1. 대표이사 1인(비상근 사내이사) 2. 이사10인(비상근 사외이사, 수석이사 1인 포함) 3. 감사 2인(비상근 감사)	변경 변경 변경	제22조	1. 대표이사 1인 이상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3. 수석이사 1인 이상 4. 감사 2인(비상근 감사)	변경 변경 추가 변경
제24조	(이사의 직무)	변경	제24조	(대표이사, 각자대표 및 공동대표이사) ③ 대표이사를 2인 이상 선임한 경우, 각자 대표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회의 결의로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조문명변경 3항신설
제34조	제1호 내지 제10호	변경	제34조	1호 내지 9호 중전과 동일하고, 중전10호를 11호로 변경함 10. 대표이사 및 수석이사 변경(직위해제 등)에 관한 사항	10호 추가
제35조	제1호 내지 제5호	변경	제35조	1호 내지 3호 중전과 동일하고, 중전 4호를 5호로 변경함 4. 제3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소집을 요청한 이사(감사 포함)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임시이사회 소집을 동의하여야 한다.	4호 추가
제38조	(의사록 등)	변경	제38조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변경
제39조	①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자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관 이 출자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3. 설립 후 회사가 매입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4. 시설임대·장비활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5. 사업수입, 기타수입 6.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구성하며, 회사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변경	제39조	회사의 재산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설립 시 출자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이 출자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3. 설립 후 회사가 매입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4. 시설임대·장비활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5. 사업수입, 기타수입 6. 그 밖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재산	1호 삭제 2호 변경 3호삭제
제40조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밖에 동 재산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회사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편성 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③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에 따른다.	변경	제40조	①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밖에 동 재산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에 따른다.	2항삭제 3항, 4항을 2항, 3항으로변경
제45조	회사는 매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	변경	제45조	회사는 매회계연도 개시 전에 ...	변경
제46조	회사는 회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		제46조	회사는 회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	
제56조	정관변경	신설	보칙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제57조	적용범위	신설	보칙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제58조	세부내규	신설	보칙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회의 의결로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부칙		신설	부칙	개정 정관의 시행일	신설